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43
----------	------

2024년 12월 19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9. 24. 남궁역 의원 외 31명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24. 10. 18.

다. 상정일자 : 제32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 2024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9.05km의 노선으로 '20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고시후 '21년 10월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었고, '24년 6월에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면목선의 재정사업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였으나 향후에도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 착공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지만 면목선 착공이 언제 이루어질

지 몰라 지역주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가중되고 있고, 관련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되어 실질적인 면목선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 교통소외지역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면목선 건설 사업의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임.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서울시 도로혼잡구간은 3년간(2014~2016년) 전국 7개 시도 대비 2배 이상 높으며, 2016년 기준으로 서울 전체 도로 구간 중 22.78%가 혼잡구간으로 산정됨.

< 연도별 7대 특·시별 도로 혼잡구간비율의 변화 >

도로등급	2014년	2015년	2016년	증감(%P)
서울특별시	19.47%	21.51%	22.78%	3.31
부산광역시	8.96%	9.88%	10.36%	1.40
대구광역시	9.34%	9.46%	10.26%	0.92
인천광역시	8.96%	9.88%	10.36%	1.40
광주광역시	9.52%	8.73%	7.80%	-1.72
대전광역시	8.07%	6.70%	6.54%	-1.53
울산광역시	4.41%	4.36%	3.94%	-0.47

주*)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특·광역시도 대상

주**) 혼잡기준속도 : 고속도로 40km/h, 도시고속도로 30km/h, 특·광역시도 15km/h 이하

주***) 24시간 중 한시간이라도 혼잡기준속도 이하로 떨어진 도로구간을 혼잡구간으로 선정

주****) 혼잡구간 비율 = 혼잡구간연장 합계 / 해당 도시 총 도로 연장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교통 빅데이터를 이용한 국가교통조사 결과('18.5.16.)

- 도로 혼잡도 개선 및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철도 건설이 강조되며, 서울시는 「제1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총 7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 총 10개 경전철 신설을 발표함.

- 현재 운행 중인 노선은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2개로, 발표된 경전철 중 대부분은 낮은 수익성과 높은 건설비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회에서는 「‘수도권 역차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함¹⁾.

- 2024년 6월 ‘면목선 경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를 최종 통과함. 면목선은 2021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의결까지 약 3년 소요됨.

< 면목선 사업 개요 >

구 분	주무부처 사업계획
사업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청량리역)~종랑구 신내동(신내역)
사업 규모	L=9.147km, 정거장 12개소
총사업비	9,836억원(국고 : 3,934억원, 지방비 : 5,902억원)
재원 분담	국고 40%, 지방비 60%
사업 기간	2025~2031년, 2032년 개통
사업 수행 주체	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자료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면목선 건설

- 현재 서울시 교통국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될 예정임. 이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기본·실시 설계와 공사를 진행하여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함.

1)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부('24.8.14.) 및 제3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가결.('24.9.5.)

< 면목선 건설 단계 >

기본계획 발주	⇒	기본계획 (1.5년)	⇒	기본·실시 설계 (2년)	⇒	공사 (6년)	⇒	개통
교통정책과 (철도사업팀)		교통정책과 (철도사업팀)		도시기반시설 본부		도시기반시설 본부		

자료 :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서울시 교통정책과-10086(24.6.12.)]

○ 면목선은 교통 소외 지역에 공급되어 지역 주민에게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교통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됨. 서울시 자치구별 지하철역 개수 차이로 교통소외지역이 존재하며, 면목선 신설을 통해 교통 서비스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지하철역 개수가 10개 이상인 자치구는 총 14개로, 송파(28), 중구(23), 강남(21) 순임. 반면 10개 미만인 자치구는 총 11개로 중랑구(8), 동대문구(6) 등이 속함²⁾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³⁾」,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⁴⁾」 등 법규에 따라 도시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도·시군계획은 철도 등 기반시설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함. 이에 서울시는 지역 및 중심지 간 교통 연결성을

2) 공공데이터포털, 서울교통공사_자치구별 지하철역 정보('24.11.27. 기준)(<https://www.data.go.kr/data/15081868/fileData.do>)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도시·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②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교통 결절점(結節點)에는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의 압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화하고,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면목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아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2023)⁵⁾’ 을 수립함.

-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동북권의 계획과제로 지역 및 중심지 간 교통 연결성을 강화하여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제시하고, 세부 내용으로 면목선 등 철도망 확충을 명시함.

○ 또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2022)⁶⁾’을 수립하고,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한 주요 분야별 추진 전략을 제시함.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분야별 추진전략 중 지역간 교통편차 해소를 제시하고, 세부 내용으로 면목선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심의 도시 철도망 구축을 명시함.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면목선 건설로 기대되는 교통 소외 완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역세권 및 지역 개발 방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⁷⁾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립된 서울시 전 부분 정책에 우선되는 최상위 공간계획
6)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수립되어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다른 계획보다는 법적 위계에서 하위에 위치하나,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상위 계획이 없어 지역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개념적으로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을 가짐
7)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결의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⁸⁾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교통실을 소관하는 교통위원회는 사전협의와 업무지원에 동의하였으며,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교통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외 부서 의견 없음.

< 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안) >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명칭 :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대표발의자 : 남궁역 의원

□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 (O/X)	업무지원 (O/X)	확인서명 (상임위원장)
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위원회	○	○	

2024년 8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8)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관련 부서 의견(교통위원회) >

서로 존중하는 의회, 청렴의회를 위한 첫걸음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운영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제327회 정례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서 검토의견 제출

운영전문위원실-1916(2024. 10. 16. '제327회 정례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견조회')호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서울특별시의회 연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관련
부서 검토의견 1부. 끝.

교통수석전문위원 **장훈**

주무관 **배효인** 의사지원팀장 **김민호** 교통수석전문위원 **장훈**
협조자 교통전문위원 **박준영**

시행 교통전문위원실-2753 (2024. 10. 25.) 접수 운영전문위원실-2010 (2024. 10. 25.)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6층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30 / 전송 02-2180-8249 / hi0503@seoul.go.kr / 부문공개(5)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관련 부서 의견(교통위원회) >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관련 부서 검토의견**

□ 검토 의견

- 동 구성결의안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하는 면목선 건설사업이 '24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추진사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바, 면목선 건설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1항에서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면목선 건설사업의 경우 최초 '07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이 미진하여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19년 재정사업으로 전환 후 다시 추진되는 등 오랜 기간 지연된 바 있고, 이후 같이 전환된 강북횡단선, 목동선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못한 가운데 면목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등 어렵게 사업이 진행되어 왔음
- 또한,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위례신사선, 서부선 등 신규 지하철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등 불안요소가 남아있는 가운데 면목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시기 등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지역주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금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면목선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 해소 및 사업의 조속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10명, 찬성 10명)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궁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43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9월 24일

발 의 자: 남궁역, 강석주, 고광민,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승진,
박춘선, 소영철, 신복자,
유만희, 윤기섭, 윤영희,
이영실, 이종태, 이희원,
임규호, 장태용, 정준호,
채수지, 최민규, 최진혁,
허·훈, 황철규 의원(32
명)

1. 주문

- 서울의 교통복지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해 '24년 6월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면목선을 조속히 착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6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위원 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를 본회의에 제출함.

2. 제안이유

-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9.05km의 노선으로 '20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 고시후 '21년 10월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었고, '24년 6월에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면목선의 재정사업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였으나 향후에도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 착공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지만 면목선 착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지역주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가중되고 있고, 관련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되어 실질적인 면목선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4. 이송처

- 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면목선은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9.05km의 노선으로 서울시는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노선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19년 2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고시후 '21년 10월 면목선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었고, '24년 6월에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면목선의 재정사업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였으나 향후에도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 착공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지만 면목선 착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지역주민의 상실감과 소외감은 가중되고 있고, 관련 행정절차가 조속히 추진되어 실질적인 면목선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의회는 면목선 건설이 재정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한다.

2024. 9.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